

서면질문서

- 質問 議員 : 정수현 의원
- 質問 題目 :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등
- 答辯公務員 :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質問 内容>

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초등학교가 2011년 9월 방학을 마치고
개학과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다급과 라급 초등학교인 논공,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내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가급 및 나급 학교인 다사, 화원, 가창(용계초등)의
초등학교는 2012년 3월부터 무상급식계획으로 있으며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재원은
시교육청에서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결정 이전부터 우리군에서는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학교의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농산물 사용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교육청 시비, 군비부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9개 읍·면사무소의 회의실 대부분이
2층에 위치해 있고, 2층으로의 이동수단은 계단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는 혼자서 2층 회의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장애인들은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19만 군민 중 한사람이라고 볼 때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군 장애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방문하면
우리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2014년이면 달성군 개청 100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읍·면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 설치하지 못한 공공시설물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간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서는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법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에서는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규정도
두고 있고

동시행령 제51조에서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바

2011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군에서 체납세와 관련
관허업을 제한(허가·인가·면허·등록 등)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타자치단체로 관허업의 제한을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관허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창교에서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강변 신설도로가
죽곡2지구아파트, 주택단지 보다 높고
도로 경사가 심하여

눈·비가 많이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곡2지구 택지보다 신설도로가 높게 설계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答 辯 書

- 질문의원 : 정수현 의원
- 질문제목 :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 답변공무원 : 부군수

- 부군수 이우순입니다.
- 존경하는 정 수 현 의원님께서
일부지역의 초등학교에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규모와
향후 지원여부, 시·군비 부담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37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이 남구,
서구 등 타지역 대비 저소득층 비율이 낮고
화원, 다사읍 등은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아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유보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 다행히 일부지역 학교는 대구시 최초로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대상 초등학교 및 학생수는
화원, 다사읍 전역 및 가창면 용계초등학교를
제외한 6개 읍·면 13개교 3,774명입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생수 12,905명의 29.2%에
해당되는 수준임을 말씀드리면서,
- 먼저, 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교의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은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
되는 쌀을 구입할 것을 전제로 급식일 180일 기준
하여 1Kg당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지원규모는
초등학교 25개교 1억5천9백만원, 중학교 14개교
1억2천8백만원, 고등학교 9개교 1억8천만원으로
총 48개교 4억6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향후 우리 농산물 구입경비 지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우수쌀을 구입토록 지원해 온 것입니다.
- 우리군에서 지원된 학교급식 보조금은 관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구입하고 부족한 차액을 지원해 온 것입니다.
-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만,
급식 단가는 1식당 초등학교 1,800원으로
무상급식 이전과 같으며 무상급식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 16만명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한 끼당 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비 매칭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군예산 반영을
조건으로 하여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약9천만원의
시비가 지원될 계획이므로

내년도에도 무상급식 지원대상학교를 포함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조에 규정된 바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더불어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향후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교육청예산 및 시, 군비 부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목표는 2014년까지 전체학생 40%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을 전제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약 42억원 정도이며 교육청 66%. 대구광역시 17%. 달성군 17%입니다.
- 학교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학부모의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대구시와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우리군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친환경급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정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答 辯 書

질문의원 : 정수현 의원

질문제목

-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관련

답변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홍병 입니다.

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대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은 2005년 청사 준공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럭, 충간이동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읍·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이 미비한 화원읍, 옥포면, 현풍면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읍·면의 경우 1층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2~3층 회의실 또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도우미와 직원교육을 통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시설물인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센터, 달성문화원과 기관단체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은 6층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설치대상이며,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은 없다하나,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물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체납세와 관련된
관허사업 제한 실적과 그 내용,
타자치단체로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실적,
지방세 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관허사업의 주요내용
및 그 절차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체납세와 관련된 우리군 및 타자치단체
관허사업 제한 실적과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년 8월 현재,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28명의 체납액 1억 1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17명으로부터 3천 300만원을 징수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였으며,
 -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미납한 관내 사업자 6명(1,700만원) 중, 2명(300만원)은 납부를 하였고 2명(600만원)은 취소하였으며, 2명(800만원)은 해당부서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타자치단체에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한 대상은 5명(700만원)으로 3명(200만원)은 납부하여 관허사업 제한 철회요구를 하였고, 2명은 대구시 대중교통과와 달서구 교통과에서 관허사업 제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에 가해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은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행정관청에 사전에 요구하는 것과 체납세 3건 이상에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는 적극적 관허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 절차에 대하여는

○ 각종 인·허가 시

체납세 유무를 조회하여 체납이 있을 시에는 완납 후 신고서를 수리하고 있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사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 조세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도 미납한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요구 공문을 발송하며, 제한이전에 체납세를 납부하였을 시에는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答辯書

- 질문의원 : 정수현 의원
- 질문제목 : 강정마을 진입로 관련
- 답변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 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창교에서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강변 신설도로가
높게 설계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도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죽곡2지구 사업시행시 향후 4차순환도로 건설을
대비하여 병행 시공하였는데, 강창교 구간은
4차순환도로(성서공단 ~ 지천)의 입체교차로 예정
구간으로서 본선은 고가차도로 통과하며
진입램프는 하부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강창교에서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4차순환도로의 램프선형 및 종단구배를 반영하여 건설하였으며, 도로경사에 따른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내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시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조치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질문서(보충)

- 질문 의원 : 정수현 의원
- 질문 제목 :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등
- 답변공무원 :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質問 内容>

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화원유통센터나
문양역 농산물 도매센터와 같은 법인 내에
전문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대량 구입으로 인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급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문급식센터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금도 최대한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의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화원읍·옥포면·현풍면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9개 읍면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사읍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장실의 경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 폭이 120~130cm이고
화장실문 넓이가 90~100cm로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읍면을 한번 둘러보시고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이동화장실 설치시
일반인용 및 장애인용 화장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화장실 이용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용으로 설치하여 일반인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2층에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행사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2층 계단을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준공한 다사읍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관련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몇 년 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1층만 사용하여도 되겠지만 향후 몇 년 후 진료과목 등의 증설로 2층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애인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text{m}^2$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읍면 청사의 승강기 설치는
건축법상 설치대상이 아니라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읍면 관공서 청사는 언제, 어떻게 사용 또는 활용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100년에 한번 사용하더라도 편의시설이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9개 읍면에 꼼꼼히 조사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읍면 공공시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진입도로는 금년 10월 중순경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국 16개 보 중 명품보로 강정보가 완공되어 준공식을 갖게 되면 하루에 차량 통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설 강정마을 진입도로를 보면 죽곡2지구 택지구획도로와 연결부분에 급경사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강정마을 진입도로는 차후에 건설될 4차 순환선 램프선형과 종단구배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고 하셨는데,
강정진입도로와 죽곡2지구 택지도로와의 경사도는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곡2지구 택지조성도로와 신설 강정마을 진입도로와의 경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였더라면 경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강정마을 진입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만, 4차 순환선 공사 착공하기 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여 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와, 미끄럼 방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 면 답 변 서

- 질문 위원 : 정수현 의원
- 답변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 질문 요지 :

답변내용

- 정수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강정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경사를 최대한 줄일 수 방안과 미끄럼 방지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2011년 9월 일

직 성명 건설도시국장 김 현 호



答 辯 書

□□ 질문의원 : 정수현의원

□□ 질문제목

○ 강정마을 진입로 관련

□□ 답변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 정수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강정마을 진입로과 관련하여

경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미끄럼 방지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충 질문하신 강정마을 진입도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죽곡2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향후 4차순환도로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반영한 병행 시공하였으며,

- 강창교에서 강정마을 진입도로는
4차순환도로의 입체교차로 예정구간으로서
램프도로로 진입후 본선과 합류하여
다시 죽곡2지구 단지로 진입토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 현재 개설된 강정마을 진입도로의 경사는
4차순환도로의 최고 높은 지점과
죽곡2지구 단지 도로노면과의 구배가 3.8%로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로의 종단구배 4%이내로
시공되었습니다.
- 도로 경사로 인한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금년 10월경 경사면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시행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수현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 질문 위원 : 정수현 의원
- 답변공무원 : 부군수
- 질문 요지 : 전문급식센타 운영 의향 및
무상급식 재원분담시 의회와 사전 논의

답변내용

- 정수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전문급식센타를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무상급식 재원 분담금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의회와 충분히 논의한 후 지원토록 할 의향이 없
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급식센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급식센타는 저렴한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급식지원센타 운영을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체계
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품목의 식자재가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품목의 생산자(농업인) 단체와
계약재배, 배송문제, 손익과 연계되는 물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96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3월 개소를 하였습니다. 6개 학교급식 전문공급 업체를 통해 배송하며 김해, 나주, 제주 등 4개 거점 생산자조직과 유통을 연계하는 등 대량의 물동량이 확보되고 물류 효율성이 높은 대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반면,
- 농산어촌지역인 우리군의 경우 다양한 품목의 식재료 조달 자체가 어렵고 넓은 지역에 소규모 식재료 배송에 비용이 많이 들어 화원유통센터나 문양역 농산물 도매 센터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자재의 다양성과 물류비용 등 운영 측면의 가능성 여부와 손익 측면의 경제성 여부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가능한 모델이 제시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다음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수현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의 급식비 재원 분담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협의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 향후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통보될 경우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일

직 부군수 성명 이우순 (인여우순)

서 면 답 변 서

- 질문 위원 : 정수현 의원
- 답변공무원 : 행정지원국장
- 질문 요지 :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답변내용

- 정수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9개 읍·면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 하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사읍의 경우에는 금년 1회 추경에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출입문 및 좌변기 등을 교체시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그 외 읍·면에 대하여도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및 회계과 청사관리팀 직원과 함께 읍·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한 후,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을 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군 관내 이동화장실 설치 시 군민체육대회 등 특별히 화장실 이용이 많은 곳에는 일반인과 장애인용을

구분 설치하여야 하겠지만, 화장실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검토 하겠습니다.

- 다사읍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읍·면 2층 사무실 및 회의실 이용 시 엘리베이터가 없어 전동 휠체어가 2층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은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 설치 대상이나, 우리군 공공시설물인 달성군 여성복지센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서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2층계단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 시피 10년, 100년에 한번 사용 하더라도 편의시설이 꼭 갖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 현재 읍·면 청사를 포함한 우리군 공공시설물 구조상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승강기 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이행 한 후

2층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는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리프트 설치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일

직 성명 행정지원국장 박 흥 병

